

## 군산월명중학교 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존경하는 학부모님들께 안내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하심을 기원하며, 평소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교육기본법」 제12조 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항(학생의 인권 보장), 제20조 3항(교사의 교육권)에 근거하여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신청 자격**

- 가. 본교 재학생 학부모
- 나.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

○ **모집분야, 인원**

- 가. 근 거 :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 나. 분 야 : 군산월명중학교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학부모 위원
- 다. 인 원 : 4명

○ **활동내용 (개정 중점 사항)**

- 가. 학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이 조례에 부합되는지 검토·심의
- 나. 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인권보호 원칙, 학급 및 수업태도(교사의 수업권)
- 다. 용의 복장, 두발, 징계 등
- 라. 생활규정 예시 홈페이지 탑재(참조)

2019년 03월 07일

**군 산 월 명 중 학 교 장**

○ **신청사항**

\_\_\_\_\_학년 \_\_\_\_\_반 \_\_\_\_\_번 학생명:

학 부 모		희 망 여 부	비 고
성 명	날인 또는 서명		

○ **기타사항**

- 가. 군산월명중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갈 경우에는 자동으로 위원자격이 상실됩니다.
- 나. 신청서는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등이 없도록 자필로 기재합니다.

**군 산 월 명 중 학 교 장 귀 하**